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31.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8. 31.

다. 상 정 일 자 : 2007. 9. 7.(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평생학습팀장 김기숙)

가. 제안사유

○ 교육과 취업을 위한 우리지역 인구 감소와 인재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종합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천시장 학회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장학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시행함(안 제4조)

○ 재산은 제천시의 출연금,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5조)

-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내지 제9조)
- 시장은 재단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11조)
- 「제천시장학회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 제정안은 제136회 제1차 정례회기에 상정되었던 안으로 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되었던 사항들을 재정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07. 8. 9일부터 8. 30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마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7. 8.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설립목적, 정관, 재단 임원구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제1내지 제4조)과 재산의 조성(제5조) 출연금(제6조), 운영경비(제7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제8조) 등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136회 임시회기에 상정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했던 안 제3조 2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안과 제4조 1호 제천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3호 우수교사 지원사업, 4호 국제교류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증진사업, 5호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에서 1호, 3호, 4호, 5호를 삭제하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제천시장학회 현황, 장학기금 관리현황,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는 재단설립의 대대적인 홍보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범시민적 참여를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으며,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부분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을 투자하여 설립 취지를 극대화 함으로써 우리시의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없 음

나. 답변요지

-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인재육성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